

제조물책임법, 다른 책임과의 구별

글 · 강창경 연구의원
한국소비자보호원

1) 결함 제품에 대한 기업의 책임

기업이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
지는 책임은 다양한다.

예를 들어 보일러 가동중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
입되어 잠을 자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을 생각해 보
자. 이 경우 보일러의 설계에 잘못이 있거나 시공에
잘못이 있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 처벌을 받
게 된다. 그리고 보일러에 결함이 있으면 안전한 보일
러로 교환해 주어야 하고, 시공에 잘못이 있으면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보일러에 결함이 있는 경우 행
정기관은 이러한 보일러가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금
지, 수리 조치, 회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
편 기업은 행정상 제재인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
게 되기도 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2) 제품 결함과 형사 책임

제조물책임은 민사상 책임으로 제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지는 책임이다. 그러나 제조자는
이러한 민사 책임 이외에 형사 책임을 지기도 한
다.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그 대표적인 형벌 규정의
하나이다. 이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
무상 지켜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하여 결함이 있는 제
품을 제조·판매하고, 이로써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
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이 되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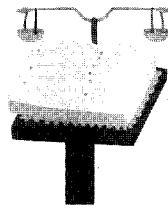
3) 제품 결함과 행정상 책임

제조자가 결함제품을 제조한 경우, 앞의 형사 책임
이외에 행정상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제조자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경우, 행정부는 동 제
품의 수거·파기·수리 등을 명하거나, 행정상 과태
료, 영업정지, 제조 정지,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
은 리콜을 명할 수도 있다.

4) 채무 불이행 책임

우리나라에서는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는 계약 책임 또는 불법 행위 책임 등
을 근거로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여 왔다. 다
시 말하면 피해자가 결함 제품의 매도인에게 채무 불
이행 책임, 하자 담보 책임 또는 보증 책임을 물어 손
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
라도 제조사 등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살펴보자.
채무 불이행 책임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는 책임을 말한다. 매도인
이 결함제품을 공급한 것은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채무의 불완전 이행이므로 이로 인
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는 결함 제품
에 의한 피해의 배상을 제대로 청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제품의 결함과 채무의 불완전
이행을 같이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② 매도인에



게 변제능력이 없을 수 있다 ③ 단순한 제품 판매자로서 피해의 원인행위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결합 제품에 의한 확대 손해까지 책임을 지도록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거래 현실에서 볼 때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결합 제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에 대한 변제 능력이 있고 실제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당위가 있다.

5)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은 매매 등의 유상 계약에서 그 목적물 자체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이다. 제조물의 결함은 하자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자 담보책임으로는 다음의 이유로 결합제품에 의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① 불완전한 이행 책임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을 수 있다 ② 매도인이 책임지기에는 가혹하다는 점이 있다 ③ 피해자는 확대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청구기간이 너무 짧다 ⑤ 더욱이 결합과 하자는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하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도 피해자의 구제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6) 보증 책임

제품의 계약서, 설명서, 표시, 광고 등에서 일정한 약속을 하거나(명시의 보증) 그러한 보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말한 경우에(묵시의 보증), 그 보증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지는 책임이다. 제조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보증의 의사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책임도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 보증의 범위와 내용에 제한

이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

7) 불법 행위 책임

불법 행위 책임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해자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결합 제품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 논거로 불법 행위 책임을 들고 있다. 제품에 결함이 있고 이를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그 결함을 일으킨 데 대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불법 행위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 책임과 달리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계약 책임의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 행위 법상의 일정한 책임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즉 위법 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만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제품의 성능, 성질, 위험성 등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제조자의 손에 있고, 소비자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설정에서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위법성 범위에 결합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도 불법 행위 법리를 너무 넓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고도 산업 사회에서 새로이 문제가 된 결합 제품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리로 불법 행위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조물 책임 정신이 싹트기 전에 구성된 불법 행위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 구성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리 구성이 요청되고 그 결과 새로운 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